|  |  |  |
| --- | --- | --- |
|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1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 및 각 직속해관 :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기업 대 소비자, 즉 B2C) 수입 조세 정책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을 화물로 취급하여 관세 및 수입단계증치세, 소비세를 과세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을 구매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화물 소매가격,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을 완세가격으로 하며 전자상거래기업,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또는 물류기업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할 수 있다.  2. 기타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 범위 내에 있는 다음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을 적용받는다.  (1) 해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거래•지급•물류 전자정보 '세가지 서류(三單)'의 비교대조가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2) 해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택배기업, 우정(郵政)기업이 통일된 거래•지급•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책임의 부담을 약속하고 국내로 반입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 물품과 거래•지급•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1회 거래 한도액은 인민폐 2,000위안이고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액은 인민폐 20,000위안이다. 한도액 내에서 수입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대하여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수입단계증치세, 소비세의 경우 세금면제액을 취소하고 당분간 법정(法定) 과세액의 70%에 따라 과세한다. 1회 한도액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거래금액을 누계 한 후 개인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단일 거래 및 완세가격이 2,000위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분할불가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전액 과세한다.  4.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품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연간 총 거래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구매인(발주인)의 신분 정보는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발주인)의 신분 정보가 대금지급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는 재정부가 기타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별도로 공표한다.  7. 이 통지는 2016년 4월 8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3월 24일 |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  **政策的通知**  财关税〔2016〕18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  为营造公平竞争的市场环境，促进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健康发展，经国务院批准，现将跨境电子商务零售（企业对消费者，即B2C）进口税收政策有关事项通知如下：  一、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按照货物征收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购买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个人作为纳税义务人，实际交易价格（包括货物零售价格、运费和保险费）作为完税价格，电子商务企业、电子商务交易平台企业或物流企业可作为代收代缴义务人。  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适用于从其他国家或地区进口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范围内的以下商品：  （一）所有通过与海关联网的电子商务交易平台交易，能够实现交易、支付、物流电子信息“三单”比对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  （二）未通过与海关联网的电子商务交易平台交易，但快递、邮政企业能够统一提供交易、支付、物流等电子信息，并承诺承担相应法律责任进境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  不属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的个人物品以及无法提供交易、支付、物流等电子信息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按现行规定执行。  三、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单次交易限值为人民币2000元，个人年度交易限值为人民币20000元。在限值以内进口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关税税率暂设为0%；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取消免征税额，暂按法定应纳税额的70%征收。超过单次限值、累加后超过个人年度限值的单次交易，以及完税价格超过2000元限值的单个不可分割商品，均按照一般贸易方式全额征税。  四、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自海关放行之日起30日内退货的，可申请退税，并相应调整个人年度交易总额。  五、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购买人（订购人）的身份信息应进行认证；未进行认证的，购买人（订购人）身份信息应与付款人一致。  六、《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将由财政部商有关部门另行公布。  七、本通知自2016年4月8日起执行。  特此通知。  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2016年3月24日 |